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7월 12일, 정부 제출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8.26.) 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소위(2024.11.20.)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
(수정가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부 제출)

제안이유

선박교통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영해 내에 있는 수역뿐만 아니라 영해 밖의 특정 수역에서도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제대상선박 선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여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해 밖 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안 제3조 제2항 및 제18조의2 신설)

- 1)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영해 밖 수역 중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선박교통의 안전 등에 관한 정보나 조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2) 영해 밖 특정 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 등에 관한 정보나 조언을 제공받으려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관할 선박교통관제관서에 관제통신으로 요청하도록 함.

나. 관제통신의 녹음 및 보존 의무의 폐지(안 제15조)

관제대상선박이 선박교통관제구역에 항행 등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도 선박교통관제사와의 통화 내용을 별도로 녹음
하여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관제통신의 녹음
및 보존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관제대상선박 선장의 부담을 경감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임재금)

가. 선박교통관제 적용범위 확대 및 용어의 명확화

개정안은 선박교통관제구역의 공간적 한계를 영해 및 내수로 명확히 하고, 현행법 관제대상선박 규정(제13조) 삭제 후 해당 내용을 정의조항으로 신설하며, 대한민국이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영해 밖 수역 중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한 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는 안전정보 제공 등의 규정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조·제12조 및 제27조, 안 제13조 삭제).

“선박교통관제구역(VTS, Vessel Traffic Service zone)”이란 항만이나 해역에서 선박의 안전한 항해와 교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교통관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역으로서, 현행법은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연안을 통과하는 대형화물선과 위험화물운반선은 어선 등 소형선박을 피해 연안에서 멀리 떨어져서 항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러한 선박들의 통항로가 일부 영해 밖까지 형성되어 있지만, 현행법의 적용범위는 영해 및 내수로 한정되어 있어 해당 선박

들의 안전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선박교통관제 지침을 개정하여 연안국(沿岸國)이 영해 밖 수역에서 관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영해 밖 수역까지 확대하여 우리나라 연안을 항해하는 대형화물선에 안전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

이에 개정안은 국제해사기구의 선박교통관제 지침에 맞추어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영해 밖 수역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개정안은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정의를 수정하여 그 공간적 범위를 영해 및 내수로 명확히 하고, 본 법에서 중요한 용어로 빈번히 사용되는 “해양사고”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며, 제13조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을 정의규정인 제2조로 이동하는 등 정의조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선박교통관제구역”과 “영해 밖 관제수역”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 영해 밖 수역에서도 선박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안 제2조제3호는 현행 제13조를 삭제하고 해당 규정의 관제대상선박에 관한 내용을 용어의 정의 형식으로 규정한 것이나 관제대상선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선박교통관제를 실시하는 선박”이라는 요건을 누락하고 있는바 동 요건을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 관제통신 청취·응답 등 선장의무 명확화

개정안은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따라야 할 대상을 “선박교통관제”에서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로,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는 시점을 “관제구역을 출입하려는 때”에서 “항행하거나 정박 또는 계류하려는 경우”로, 관제통신 상시 청취·응답 의무가 있는 시점을 “관제구역을 출입·이동하는 경우”에서 “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 또는 정류하는 경우”로 변경하는 등 일부 조문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26조).

현행법은 관제통신 청취·응답 등 관제대상선박 선장의 의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선박교통관제”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음.

또한, 해양사고 예방, 항만 운영 등을 위해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 또는 계류시설에 도착할 때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출입하려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이 해상에서 일시적으로 멈춰서는 정박·정류하는 경우에도 충돌·좌초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관제통신을 청취·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행 규정에는 선장이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응답해야 하는 시기를 “관제구역을 출입·이동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어 선박이 “정박·정류”하는 경우도 포함

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등 일부 조문의 내용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관제통신 청취·응답 등 관제대상선박 선장의 의무에 관한 내용을 현행 제도에 맞게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명확한 법문으로 인한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여 해양사고 위험을 낮추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안 제14조제1항 본문은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으로 하여금 어떠한 제한도 없이 선박교통관제사의 모든 지시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준수대상이 되는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를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하는 등으로 그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같은 항 단서에서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지시 불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지시 불이행의 사유를 선박교통관제사에게 알리는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즉시 또는 지체없이” 등의 문구를 추가하여 그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선장의 관제통신 녹음·보존 의무폐지 등

개정안은 관제대상선박의 선장과 선박교통관제사로 하여금 관제통신 시 한국어 또는 영어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는 관제통신의 원칙을 신설하고, 선장에게 부여된 관제통신의 녹음·보존의 의무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27조).

현행법에 따르면 선박교통관제관서와 여객선 등 선박의 선장은 관제통신을 녹음·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선박설비기준」 제108조의7은 선박에 항해자료기록장치(VDR, Voyage Data Recorder)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선박과 선박교통관제관서 간의 이루어지는 관제통신 내용이 녹음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원법」 제16조, 제1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호에 따라 선장은 항해자료기록장치를 포함한 모든 항해장치를 점검·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선박에서 관제통신녹음이 이루어지고, 선박교통관제관서에서도 관제통신을 녹음·보존하고 있으므로, 선장의 관제통신 녹음·보존 의무 규정 삭제를 통해 선박운항자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다만, 현행 「선박안전법」은 선장으로 하여금 선박의 항해안전차원

에서 모든 항해장치의 정기적 점검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 선박의 안전 항해와 사고 예방,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제통신 녹음 및 보존 의무를 직접적으로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

개정안이 수용되어 선박의 녹음의무와 관련 규정을 삭제할 경우 현행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녹음방법 및 보존기간 등의 세부내용도 같이 삭제된다는 점과

선박교통관제관서와 관제대상선박에 대해 관제통신을 녹음·보존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은 선박사고의 신속한 원인규명을 위해 선박교통관제 실시기관과 선박 사이에 이루어지는 통신기록이 파기나 변경이 없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 필요성에 따라 규정한 사항이므로,

해양사고 발생 시 보다 정확한 사고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의 해당 선박을 항해하는 선장이 당시 상황을 녹음·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관제통신 사용언어를 명시하고 간결한 관제통신의 원칙을 신설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효율적이고 원활한 관제통신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라. 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개정안은 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대상을 “항행하거나 정박 또는 정류하는 관제대상선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상기상상태, 해상교통량”을 타법률(「기상법」)과 현행법의 제명에 부합하도록 각각 “해양기상상태, 선박교통량”으로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20조).

현행법은 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대상을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에 대한 관찰확인, 안전정보의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조언·권고·지시로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14조제4항과 같이 현행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에서 “항행, 정박, 정류하는 관제대상선박”으로 업무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언’과 ‘권고’ 중 국제지침과 법문의 간결성을 고려하여 ‘권고’를 삭제하는 한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제8조의2가 신설(2022. 10. 18.)됨에 따라 현행법 제18조제4호에 해당 조항을 추가 규정하도록 하고, 기상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라 “해상기상상태”를 “해양기상상태”로, 본법의 제명과 같이 “해상교통량”을 “선박교통량”으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국제지침과 타입법의 개정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마. 영해 밖 관제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관리 규정 신설

개정안은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해 안전·교통·기상에 관한 정보 또는 조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관서에 관제통신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해 밖 관제수역에서 관제대상선박의 관제통신 실시 방법에 대해서는 제14조제4항 및 제15조를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국제해사기구의 선박교통관제지침에 따르면 연안국(沿岸國)은 “영해 밖 수역에서” 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중 “지시”를 제외한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할 수 있고,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및 내수로 한정된 “선박교통관제구역”과는 다르게 “영해 밖 수역”에서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에게 강제로 지시를 따르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영해 밖 수역에서의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는 선박교통관제관서가 지시를 제외한 정보나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영해 밖 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조언에 관한 사항과 그러한 정보·조언을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선장이 취해야 할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개정안은 영해 밖 관제수역에 대한 선박교통의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하되,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해당 정보나 조언을 관제통신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와 같이 관제통신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영해 밖 수역에서의 선박의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안 제18조의2제2항에서 선박교통관제관서에 관제통신을 요청하는 주체를 “정보나 조언을 제공받으려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주어를 문장 앞으로 배치하여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정보나 조언을 제공받으려는 경우”라고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임.

또한, 안 제18조의2제3항에서 선장이 지켜야 할 사항은 제15조 전체내용이 아닌 제15조제1항의 관제 통신 원칙만을 의미하므로 제15조제1항만을 준용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경태)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따라야 할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를 “제18조제1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로 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여 통보 시점을 명확히 함.

또한, 개정안 중 선장의 관제통신 녹음·보존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은 사고원인 규명이라는 관제통신 녹음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현행 규정을 유지하도록 하고, 관제대상선박을 “선박교통관제 실시 대상이 되는 선박”으로 한정하는 등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1.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1.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정이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따라야 할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를 “제18조제1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로 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여 통보 시점을 명확히 함.

또한, 개정안 중 선장의 관제통신 녹음·보존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은 사고원인 규명이라는 관제통신 녹음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현행 규정을 유지하도록 하고, 관제대상선박을 “선박교통관제 실시 대상이 되는 선박”으로 한정하는 등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함.

수정주요내용

가. 관제대상선박을 한정하는 중요한 요건인 “선박교통관제 실시 대상이 되는 선박”이라는 내용이 개정안에는 누락되어 있는바 현행 법과 같이 해당 요건을 포함함(안 제2조제3호).

나. 해양경찰청장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영해 밖 수역의 범위가

국제협약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함
(안 제3조제2항).

다. 선장이 따라야 하는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를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하여 “제18조제1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선장이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여 통보 시점을 명확히 하며, 신고에 대한 시행령 위임이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안전우려 사항을 신고하는 사유를 한정하여 규정함(안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5항).

라. 선장의 관제통신 녹음·보존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은 사고원인 규명이라는 관제통신 녹음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함(안 제15조제2항).

마.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고, 영해 밖 관제수역에서 관제통신 시 선장이 따라야 할 사항은 제15조제1항의 관제통신 원칙만을 의미하므로 안 제15조 전체가 아닌 “제15조제1항”만을 준용하도록 수정함(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

바. 선장의 관제통신 녹음·보존 의무 규정 폐지를 전제로 한 개정안의 경과조치를 삭제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삭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에서”를 “중에서 선박교통관제 실시 대상이 되는”으로 한다.

안 제3조제2항 중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영해 밖 수역으로서”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2는 영해 밖 수역으로서”로, “관제대상선박에 대해서는 제18조의2를”을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로 한다.

안 제14조제1항 본문 중 “선박교통관제사의”를 “제18조제1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유를”을 “사유를 지체 없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를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 중인 경우로서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의 항로상의”로 한다.

안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선박교통관제관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장은 제14조 제4항에 따른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통신의 녹음방법 및 보존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특보”를 “「기상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정보나 조언을 제공받으려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을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제1항에 따른 정보나 조언을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해”를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해”로, “제15조를”을 “제15조제1항을”로 한다.

안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관제통신을 청취·응답하지 아니한 사람
3. 제14조제6항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
4.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사람

안 부칙 제1조부터 제3조를 삭제하고, 본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	제2조(정의)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1.2. (개정안과 같음)
2. “선박교통관제구역”이란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말한다.	2. ----- ----- --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수역 내에서 ----- ----- -----. 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이하 “영해”라 한다) 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에 따른 내수(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u>계속할 수 없</u> <u>는 하천·호수</u> <u>·늪 등은 제</u> <u>외하며, 이하</u> <u>“내수”라 한다)</u>	
<u><신 설></u>	3. <u>“관제대상선박”</u> <u>이란 「선박법」</u> <u>제1조의2제1항에</u> <u>따른 선박(같은</u> <u>항 제3호에 따른</u> <u>부선은 제외한다)</u> <u>중에서 다음 각</u> <u>목의 어느 하나</u> <u>에 해당하는 선</u> <u>박을 말한다.</u> <u>가. 국제항해에</u> <u>취항하는 선박</u> <u>나. 총톤수 300톤</u> <u>이상의 선박.</u> <u>다만, 「어선</u> <u>법」 제2조제1</u> <u>호에 따른 어</u> <u>선 중 국내항</u> <u>사이만을 항행</u> <u>하는 내항어선</u> <u>은 제외한다.</u>	3. ----- ----- ----- ----- ----- <u>중에서 선박교통</u> <u>관제 실시 대상</u> <u>이 되는-----</u> -----. 가. ~ 라. (개정 안과 같음)

	다.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라.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선박교통의 안전등을 위하여 관찰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3. (생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4.5. (개정안과 같음)
<신설>	5. “해양사고”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영해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영해 및 내수에 있는 관제 대상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개정안과 같음)

및 내수(해상항행선
박이 항행을 계속
할 수 없는 하천·호
수·늪 등은 제외한
다)에 있는 선박 중
에서 제13조에 따
른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 설>

제14조(선장의 의무 등) ① 관제대상선

②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선박교
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영해 밖
수역으로서 해양경
찰청장이 해양수산
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이하
“영해 밖 관제수역”
이라 한다)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
해서는 제18조의2
를 적용한다.

제14조(선장의 의무 등) ① 관제대상선

[illegible]

제14조(선장의 의무
등) ① -----

박의 선장은 선박
교통관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선박교
통관제에 따를 경
우 선박을 안전하
게 운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선박
교통관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관제에도 불구하고 그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한다.

③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
제구역을 출입하려
는 때에는 해당 선

박의 선장은 선박
교통관제사의 지시
에 따라야 한다. 다
만, 선박교통관제사
의 지시에 따를 경
우 선박을 안전하
게 운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그 지
시에 따르지 아니
할 수 있으며, 해당
지시에 따르지 아
니한 사유를 선박
교통관제사에게 알
려야 한다.

② -----

----- 지시에 따르
는 경우에도 -----

-----.

③ -----
-----선박교통관
제구역에서 항행하
거나 정박(碇泊) 또

[illegible]

② (개정안과 같음)

③

박교통관제구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
관제관서에 신고하
여야 한다.

④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출입·이동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와 관제통신 주파수를 갖추고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응답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의 장애로 인하여 선박교통관제사와 지정된 주파수로 통화가 불가능할 때에는 휴대전화 등 다른 통신주파수를 이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⑤ 선박교통관제구
역 내에서 항행 중

는 계류(繫留)하려
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illegible]

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

-----경우에는-----

④ (개정안과 같음)

⑤ _____
_____선박교통관

인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항로상의 장애물이나 해양사 고 발생 등으로 선 박교통의 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 려가 있다고 인지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선박교 통관제관서에 신고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 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대 상선박의 신고 절 차, 관제구역별 관 제통신의 제원(諸 元) 등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관제통신의 녹 음) ① 선박교통관 제관서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선박 의 선장은 제14조 제4항에 따른 관제	제구역에서----- ----- ----- ----- ----- ----- ----- ----- ----- ----- -----. ⑥ ----- ----- ----- ----- 신고 및 선 박교통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諸 元) 등에 관하여 - ----- -----. 제15조(관제통신의 원 칙 및 녹음) ① 관 제대상선박의 선장 과 선박교통관제사 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제통신을	제구역에서 항행 중인 경우로서 선 박교통관제구역 내 의 항로상의----- ----- ----- ----- ----- ----- ----- -----. ⑥ (개정안과 같음) 제15조(관제통신의 원 칙 및 녹음) ① (개 정안과 같음)
---	---	--

<u>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여야 한다.</u>	<u>할 때에는 한국어 또는 영어를 사용하여 관련 정보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통신 녹음방법 및 보존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② 선박교통관제관서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관제통신을 녹음하고 보존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② 선박교통관제관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여야 한다.</u> <u>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통신의 녹음방법 및 보존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신 설></u>	<u>제18조의2(영해 밖 관제수역에서 정보 등의 제공) ① 해양경찰청장은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조</u>	<u>제18조의2(영해 밖 관제수역에서 정보 등의 제공) ①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해양경찰청장-----</u> <u>-----</u>

	<u>언을 제공할 수 있다.</u> ----- ----- ----- ----- ---	
	<u>1. 안전에 관한 정보 또는 조언</u> <u>2. 혼잡한 교통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선박교통정보 또는 조언</u> <u>3.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특보 등의 기상정보</u> <u>4. 그 밖에 선박교통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정보 또는 조언</u> <u>② 제1항에 따른 정보나 조언을 제공받으려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u>	1.2. (개정안과 같음) 3. 「기상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u>해양기상특보</u>----- 4. (개정안과 같음) ② <u>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제1항에 따른 정보나 조언을 제공받으려는 경우</u>

	<u>대통령령으로 정하</u> <u>는 바에 따라 해당</u> <u>관제수역을 관할하</u> <u>는 선박교통관제관</u> <u>서에 관제통신으로</u> <u>요청하여야 한다.</u>	<u>에는</u> ----- ----- ----- ----- ----- -----.
	③ <u>영해 밖 관제수</u> <u>역에서 관제통신</u> <u>실시 방법 등에 관</u> <u>하여는 제14조제4</u> <u>항 및 제15조를 준</u> <u>용한다.</u>	③ <u>제1항 및 제2항</u> <u>에서 규정한 사항</u> <u>외에 영해</u> ----- ----- -- <u>제15조제1항을</u> -- -----.
제27조(과태료) 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1. (생략) 2. (생략)	제27조(과태료) ① -- ----- ----- ----- -----.	제27조(과태료) ① -- ----- ----- ----- -----.
	1. (현행과 같음) 3. (현행 제2호와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u>제14조제4항을</u> <u>위반하여 무선설</u> <u>비를 갖추지 아</u> <u>니하거나 관제통</u> <u>신을 청취·응답</u> <u>하지 아니한 사</u> <u>람</u>

3. 제14조제6항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사람 ② · ③ (생략)	2. 제14조제3항에 따른----- ----- ----- ----- <삭 제> ② ·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제통신의 녹음 및 보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제통신 의무 녹음 대상 선박의 선장이 녹음한 관제통신의 보존에	3. 제14조제6항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 4.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사람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 제>
--	--	---

	<u>관하여는 제1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u> <u>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2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u>	<u><삭 제></u>
--	---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위하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수역 내에서”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이하 “영해”라 한다)

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에 따른 내수(해상항행선박이 항해를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수·늪 등은 제외하며, 이하 “내수”라 한다)

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영해 밖 관제수역”이란 관제대상선박이 항행하는 영해와 영해 사이의 수역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말한다.

3. “관제대상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부선은 제외한다) 중에서 선박교통관제 실시 대상이 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나.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중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다.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라.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선박교통의 안전 등을 위하여 관찰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5. “해양사고”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2는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
상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2조제1항 중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제13조에 따른”을 “선박교
통관제구역에서”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제에도 불구하
고”를 “지시에 따르는 경우에도”로 한다.

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제18조제1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의 지
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를 경우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
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유를 지체 없이
선박교통관제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제3항 중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출입하려는 때에는”을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碇泊) 또는 계류(繫留)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출입·이동하는 경우”를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 또는 정류(停留)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보고”를 “청취·응답”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항행 중인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을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 중인 경우로서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신고 절차, 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諸元) 등”을 “신고 절차 및 선박교통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諸元) 등에 관하여”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관제통신의 원칙 및 녹음) ① 선박교통관제사와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제통신을 할 때에는 관련 정보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선박교통관제관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통신의 녹음방법 및 보존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8조까지”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의2 및 제9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한다.

1.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 또는 정류하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한 관찰확인,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조언 또는 지시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 ① 해양경찰청장은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선박교통관제를 할 수 있다.

1.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조언
2. 혼잡한 교통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선박교통정보 제공 또는 조언
3. 「기상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 등의 기상정보 제공
4. 그 밖에 선박교통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조언

②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제수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를 관제통신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영해 밖 관제수역에서 관제통신 실시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0조제1항 중 “해상기상상태, 항로상태”를 “해양기상상태, 항로상태”로 한다.

제26조 중 “선박교통관제”를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로 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중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선박교통관제구역”이란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말한다.	2. ----- ----- 위하 여 다음 각 목의 수역 내에서 ----- -----.
<u><신 설></u>	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이하 “영해”라 한다)
<u><신 설></u>	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에 따른 내수(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수·늪 등은 제외하며, 이하 “내수”라 한다)
<u><신 설></u>	2의2. “영해 밖 관제수역”이란 관제대상선박이 항행하는 영해와 영해 사이의 수역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말한다.

<신 설>

3. (생 략)

<신 설>

3. “관제대상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부선은 제외한다) 중에서 선박교통관계 실시 대상이 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나.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중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다.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험화물 운반선

라.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선박교통의 안전 등을 위하여 관찰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4. (현행 제3호와 같음)

5. “해양사고”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영해 및 내수(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수·늪 등은 제외한다)에 있는 선박 중에서 제13조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2조(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① 해양경찰청장은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제13조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이 따라야 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3조(관제대상선박) 선박교통관제를 실시하는 대상 선박(이하 “관제대상선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2.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중 국내항

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2는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2조(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사이만을 항행하는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3.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4. 그 밖에 관할 선박교통관제 구역에서 이동하는 선박의 특성 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선박

제14조(선장의 의무 등) ① 관제 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선박교통관제에 따라 경우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관제에도 불구하고 그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한다.

③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출입하려는

제14조(선장의 의무 등) ① 관제 대상선박의 선장은 제18조제1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라 경우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유를 지체 없이 선박교통관제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
-----지시에 따르는
경우에도-----
-----.

③ ----- 선
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

때에는 해당 선박교통관제구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출입·이동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와 관제통신주파수를 갖추고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응답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의 장애로 인하여 선박교통관제사와 지정된 주파수로 통화가 불가능할 때에는 휴대전화 등 다른 통신주파수를 이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⑤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항행 중인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항로상의 장애물이나 해양사고 발생 등으로 선박교통의 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대상선

나 정박(碇泊) 또는 계류(繫留)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

④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 또는 정류(停留)하는 경우에는-----

-----청취·응답-----

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 중인 경우로서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의 -----

⑥ -----

박의 신고 절차, 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諸元)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관제통신의 녹음) ① 선박교통관제관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장은 제14조 제4항에 따른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통신 녹음방법 및 보존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에 대한

----- 신고 절차 및 선박교통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諸元) 등에 관하여-----
-----.

제15조(관제통신의 원칙 및 녹음)

① 선박교통관제사와 관제대상 선박의 선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제통신을 할 때에는 관련 정보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선박교통관제관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통신의 녹음방법 및 보존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

-----.

1.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 또는 정류하는

관찰확인, 안전정보의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조언·권고·
지시

2.·3. (생략)

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8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역항
질서 단속에 관한 정보의 제
공

5.·6. (생략)

<신설>

관제대상선박에 대한 관찰확
인,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조언 또는 지시

2.·3. (현행과 같음)

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의2
및 제9조부터 제18조까지-----

5.·6.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 ① 해양경찰청
장은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선박교통관제를 할 수
있다.

1.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조언

2. 혼잡한 교통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선박교통정보
제공 또는 조언

3. 「기상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 등의 기
상정보 제공

4. 그 밖에 선박교통안전을 위
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

	<u>는 사항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조언</u> ② <u>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제수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 관제관서에 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를 관제통신으로 요청할 수 있다.</u> ③ <u>영해 밖 관제수역에서 관제통신 실시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u>
제20조(선박교통관제사의 권한)	제20조(선박교통관제사의 권한)
① <u>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 관제구역 내 해상기상상태, 항로상태,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등을 고려하여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박의 입항·출항 및 이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u>	① ----- ----- <u>해양기상상태, 항로상태</u>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벌칙)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u>선박교통관제에</u>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사람	제26조(벌칙) ----- ----- <u>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u> ----- -----

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4. <u>제15조제1항</u>을 위반하여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사람 ② · ③ (생략)	----- -----. 제27조(과태료)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15조제2항</u>----- ----- ----- ② · ③ (현행과 같음)
---	---